

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3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11월 23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서울시 조직체계의 조기 안정화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해 시행일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을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부칙에서 시행일을 “2019년 1월 17일”에서 “2019년 1월 1일”로 수정함(안 부칙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2019년 1월 17일”을 “2019년 1월 1일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 data-bbox="464 450 544 495">부칙</p> <p data-bbox="204 600 820 719">이 조례는 <u>2019년 1월 17일부터</u> 시행한다.</p>	<p data-bbox="1107 450 1187 495">부칙</p> <p data-bbox="842 600 1460 719">이 조례는 <u>2019년 1월 1일부터</u> 시행한다.</p>

#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경제진흥본부”, “복지본부”, “도시교통본부”, “안전총괄본부”, “도시재생본부”, “주택건축국”을 각각 “경제정책실”, “복지정책실”, “도시교통실”, “안전총괄실”, “도시재생실”, “주택건축본부”로 한다.

제6조 제목 “(경제진흥본부)”를 “(경제정책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제진흥본부장”을 “경제정책실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조성”을 “조성·활성화”로 하여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2.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6조제3호,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8호를 제5호로 한다.

### 3. 창업정책 수립·지원,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

### 4. 캠퍼스타운 조성·활성화에 관한 사항

### 6. 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·협력에 관한 사항

제7조 제목 “(복지본부)”를 “(복지정책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복지본부장”을 “복지정책실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지원·관리”를 “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”로 한

다.

제8조 제목“(도시교통본부)”를“(도시교통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“도시교통본부장”을“도시교통실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호 중“도시철도 계획·관리”를“도시철도 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2. 도시철도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1호 중“환경계획, 환경교육, 환경협력”을“환경계획, 환경협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“비산먼지 관리, 경유차 저공해화,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”을“미세먼지에·경보제,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생활대기질 관리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“보급, 온실가스 감축,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, 생활대기 관리”를“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호(종전의 제7호) 중“시민협력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”를“시민협력,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·에너지교육”으로 한다.

## 4. 경유차 저공해화,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,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에 관한 사항

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2. 신규 관광산업분야 육성, MICE 및 융복합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

제15조 제목 “(안전총괄본부)”를 “(안전총괄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총괄본부장”을 “안전총괄실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 제목 “(도시재생본부)”를 “(도시재생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시재생본부장”을 “도시재생실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(중전의 제8호) 중 “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·조정”을 “주거재생정책의 수립·조정·시행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1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8.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·진흥에 관한 사항

제17조제1호 중 “생활권계획 수립·조정”을 “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·운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2. 도심 및 광역중심 발전계획 수립 및 생활권계획 수립·조정·시행에 관한 사항

제1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8.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

제18조 제목 “(주택건축국)”을 “(주택건축본부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택건축국장”을 “주택건축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호,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, 제6호 및 제3호로 하고,

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역세권청년주택·사회주택·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

4. 소규모 건축물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18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정비사업 및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

8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

제50조제2항 중 “덕수궁길 15(서소문동)”을 “청계천로 8(무교동)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제목 중 “제72조”를 “제74조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실·본부·국의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경제진흥본부, 복지본부, 도시교통본부, 문화본부, 기후환경본부, 행정국, 재무국, 평생교육국, 관광체육국, 시민건강국, 안전총괄본부, 도시재생본부, 도시계획국, 주택건축국, 푸른도시국, 물순환안전국, 소방재난본부</u>를 둔다.</p>	<p>제4조(실·본부·국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경제정책실, 복지정책실, 도시교통실</u>----- ----- -----<u>안전총괄실, 도시재생실</u>----- -- <u>주택건축본부</u>----- ----- --.</p>
<p>제6조(<u>경제진흥본부</u>) <u>경제진흥본부</u>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산업거점 <u>조성</u>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3. <u>소상공인,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6조(<u>경제정책실</u>) <u>경제정책실장</u>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조성·활성화</u> ----- -----</p> <p>2. <u>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창업정책 수립·지원,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</u>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4. <u>경제민주화, 민생침해근절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<u>문화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디지털산업 육성 및 창업정책 수립·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<u>외국인 투자유치,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(생략)</p>	<p><u>사항</u></p> <p>4. <u>캠퍼스타운 조성·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〈삭 제〉</u></p> <p>6. <u>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·협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〈삭 제〉</u></p> <p>5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
<p>제7조(복지본부) 복지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복지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·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~ 6. (생략)</p>	<p>제7조(복지정책실) 복지정책실장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u>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</u>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도시교통본부) <u>도시교통본부</u></p>	<p>제8조(도시교통실) <u>도시교통실장</u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같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교통정책의 수립, 교통제도의 개선 및 <u>도시철도 계획·관리</u>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>2. ~ 9. (생 략)</p> <p>제10조(기후환경본부) (생 략)</p> <p>1. <u>환경계획, 환경교육, 환경협력, 저탄소 녹색성장,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</u>에 관한 사항</p> <p>2. 대기질 개선, <u>비산먼지 관리, 경유차 저공해화,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</u>에 관한 사항</p> <p>3. 기후변화 대응, <u>친환경자동차 보급, 온실가스 감축,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, 생활대기 관리</u> 등에 관한 사항</p>	<p>-----.</p> <p>1. ----- -----<u>도시철도 계획</u>----- -----</p> <p>2. 도시철도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3. ~ 10. (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</p> <p>제10조(기후환경본부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환경계획, 환경협력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<u>미세먼지에·경보제,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생활대기질 관리</u>-----</p> <p>3. ----- ---<u>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4. ~ 6. (생 략)</p> <p>8. 에너지 분야 <u>시민협력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</u> 등에 관한 사항</p>	<p>4. <u>경유차 저공해화,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,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~ 7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</p> <p>8. -----<u>시민협력,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·에너지교육</u>-----</p>
<p>제13조(관광체육국)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관광유치 및 MICE산업 육성</u>에 관한 사항</p> <p>3. ~ 4. (생 략)</p>	<p>제13조(관광체육국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신규 관광산업분야 육성, MICE 및 융복합관광산업 진흥</u>에 관한 사항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<u>안전총괄본부</u>) <u>안전총괄본부</u>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	<p>제15조(<u>안전총괄실</u>) <u>안전총괄실장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도시재생본부) <u>도시재생본부</u>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대규모 부지 도시계획적 활용 방안 수립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대규모 부지 실행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~ 7. (생 략)</p> <p>8. <u>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·조정,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<u>공공관리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 <u>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1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16조(도시재생실) <u>도시재생실장</u>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 제〉</p> <p>〈삭 제〉</p> <p>2. ~ 5. (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</p> <p>6. <u>주거재생정책의 수립·조정·시행</u> ----- ----</p> <p>〈삭 제〉</p> <p>〈삭 제〉</p> <p>7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p> <p>8. <u>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·진흥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도시계획국) (생 략)</p> <p>1. 도시계획, 광역도시계획, 도시발전종합대책 및 <u>생활권계획 수립·조정</u> 등에 관한 사항</p> <p>2. 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·운용에 관한 사항</p> <p>3. ~ 7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제17조(도시계획국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<u>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·운용</u>-----</p> <p>2. <u>도심 및 광역중심 발전계획 수립 및 생활권계획 수립·조정·시행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18조(<u>주택건축국</u>) <u>주택건축국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p>2.·3. (생 략)</p> <p>4. (생 략)</p>	<p>제18조(<u>주택건축본부</u>) <u>주택건축본부장</u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역세권청년주택·사회주택·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·6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3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>5. <u>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법 건축물의 단속·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한옥의 보존·진흥에 관한 사항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>제50조(설치) ① (생 략)</p> <p>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<u>덕수궁길 15(서소문동)</u>에 둔다.</p> <p>【별표3】 <u>시립병원의 명칭 및 위치</u> 〔제72조제2항 관련〕</p>	<p>4. <u>소규모 건축물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삭 제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삭 제〉</p> <p>7. <u>정비사업 및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<u>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재정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50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청계천로 8(무교동)</u>-----.</p> <p>【별표3】 ----- 〔제74조-----〕</p>